

 보도료 			
보도일시	2022. 1. 18.(화) 조간 *인터넷 2022. 1. 17.(월) 12:00 이후 / 총 4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	과 장 지영철 사무관 양재경	044-202-7425 044-202-7431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운용

-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 강화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총 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 - 제7호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45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법무법인 디라이트, 서일이앤엠(주), ㈜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및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한 15억 원으로 결성됐다.
-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*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함께,
 - * 자금의 60% 이상을 투자 주목적 사업인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의무 투자
 -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

-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수행 및 민간투자를 촉진해 오고 있다.
 - 2018년부터는 기존의 (예비)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자금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성장시켰으며,
 -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·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.
- 2022년 현재 제7호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총 40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총 303억원을 투자하였으며
- * 총 408억 원 정책자금은 정부예산 260억 원과 민간출자금 148억 원으로 구성
- 2020년 결성한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 85억 원을 활용하여 11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·운영하여 모태펀드 투자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.
-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.

<붙임>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개요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양재경 사무관 ☎ 044-202-7431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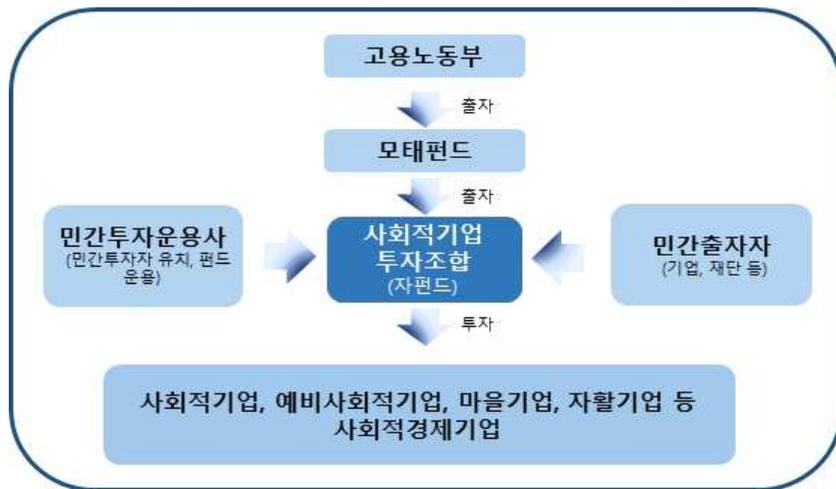
- **(목적)** 정부의 초기자금(Seed Money)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 시장 조성, 사회적기업이 이를 통해 R&D,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
- **(법적 근거)*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2
- **(규모)** 408억원 조성(정부예산 260억원 + 민간출자금 148억원)

<투자조합별 결성시기 및 결성금액>

(단위: 억원)

구 분	제1호	제2호	제3호	제4호	제5호	제6호	제7호
결성일	'11.6.22.	'12.9.6.	'13.11.27.	'15.2.2.	'18.11.7.	'20.11.3.	'21.12.20.
결성금액 (고용부/민간)	42 (25/17)	40 (25/15)	60 (25/35)	40 (25/15)	108 (75/33)	58 (40/18)	60 (45/15)

○ 추진체계 및 절차



- ① **(출자)** 고용부 → 모태펀드에 출자금 납입
- ② **(투자운용사 모집·선정)** (주)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(자펀드)를 구성·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
- ③ **(투자조합(자펀드) 결성)** '투자운용사의 투자자(조합원) 모집 → 조합원 총회 → 투자조합 등록' 절차를 거쳐 조합결성
 - * 총 결성액의 25% 이상 민간출자금이 조성되어야 조합 결성 인정
- ④ **(투자조합 운용)** 투자운용사가 자금을 운용하며,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*에 60% 이상 투자
 - *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**사회적기업**, 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**예비 사회적기업**,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**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**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사회적기업(예비포함)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, ④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, ⑤ 기타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등
- ⑤ **(수익 등 배분)** 수익 또는 손실된 회수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및 조합 해산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
- ⑥ **(투자조합 해산)** 만기 도래 등 해산 사유 발생 → 해산계획 신고·수리 → 해산 및 청산 → 등록 말소
- ⑦ **(회수금 재출자)** 해산 후 회수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재출자

* 제6호 투자조합부터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 재출자하여 결성